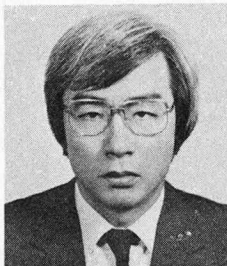


“양돈업 등록제를 폐지하라”

대기업의 양돈장에서는 수출, 계열화 및 종돈업의 창구도 모자라 심지어 시험사육장이라는 명목으로 양돈장을 신축, 사육규모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허가 상한선인 모돈 1,000두 범위내로 규제, 전업규모의 양돈농가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김 원 호

(본회 인천지부장, 양돈산업정책추진위원)

옛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농사를 지어오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거두어 들인 곡식 한 톨도 아끼고 그 잔유물이나 껍질 또는 먹다 남은 음식물 한 알이라도 버리지 않고 이들을 이용하여 부업적으로 가축을 길러 왔다. 이들 가축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면서 농가부업의 소득원으로 비중있게 차지하게 된 것이 돼지사육이라 하겠다.

어미돼지 한두마리를 길러 새끼를 내고 이것을 팔아서 자식들의 교육비나 가게살림에 보태어 왔으며, 또한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면 미리 시장에서 새끼돼지 한마리를 사다가 직접 길러서 잔치날이 되면 잡아서 잔치를 치루어 왔다. 이러한 풍습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래히 잔치날에는 돼지 한마리를 잡는 것이 관습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지사육이 농가의 부업에서 부터 시작하여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소득원이었던 것이 산업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천과 눈부신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이들 농민들의 소득원이 점차 침식당하면서 중소규모의 돼지 사육장이 늘어나 전업양돈이 늘어나고 또한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9년 극심했던 양돈불황으로 인하여 부업규모의 양돈농가들은 크나 큰 타격을 받고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돈의 호황기를 틈타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도시근교의 양돈장이 늘어나면서 전업화 하기 시작되었다.

”

현행 축산법상 등록규모는 모든 50두 이상 499두까지이고, 허가대상은 모든 500두 이상 1,000두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법 시행령의 예외 조치로 인하여 등록대상 양돈장은 심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기업의 양돈장은 수출, 계열화 및 종돈업 등으로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욱 빈곤에 빠지는”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

대기업이 양돈업에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설이나 사육규모를 마구 늘려 양돈경기의 불안 요인에 부채질하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원마저 점차적으로 대기업에 유리당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욱 빈곤에 빠지는”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가 성행되자 이들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를 규제하고 대규모 사육을 억제하여 양돈업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는 전업규모의 양돈업자들을 육성·보호하는 차원에서 축산법의 개정을 건의·요청하였으나, 법을 개정함에 있어 전업규모의 양돈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업이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법의 시행과정에서도 전업규모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법의 간섭을 받고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 심한 타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에서는 수출, 계열화 및 종돈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육규모를 늘려 왔으나, 모든 50두 이상의 등록규모인 전업 양돈농가에서는 당초 등록 숫자에서 1마리도 늘리지 못하도록 심한 규제를 받아 왔으며, 그나마 등록을 하지 못한 전업양돈 농가가 등록을 하고자 해도 실제 사육규모는 무시한채 등록규모 하한선인 50두만 등록을 받아 주고 그 나머지는 감축하라는 식으로 법이 운영되고 보

니 육성·보호해야 할 전업규모 양돈업자만 지나칠 정도의 규제를 당하였고, 규제를 해야 할 허가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양돈장은 오히려 사육규모를 증식시켜 왔던 것이다.

축산법 자체를 보면 등록규모는 모든 50두 이상 499두까지이고, 허가대상은 모든 500두 이상 1,000두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법시행령의 예외조치로 인하여 등록대상 양돈장은 심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기업의 양돈장은 수출, 계열화 및 종돈업 등으로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었다고 본다.

또한, 대기업의 양돈장에서는 수출, 계열화 및 종돈업의 창구도 모자라 심지어는 시험사육장이라는 명목으로 양돈장을 신축하여 사육규모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힘없는 영세 양돈농가에서는 소득원마저 점차 빼앗기고 특히, 양돈업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살아야 하고 있는 전업규모의 양돈업마저도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태라고 하겠다.

수출업 자체만 해도 현재 수출제도상 종돈은 수출이 가능하나 생돈 자체를 수출하지 못하고 부분육으로서 정육 도는 가공육을 수출하고 있어 양돈업자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또한 돼지 한마리의 지육량에 대하여 약 30% 정도 밖에 수출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양은 시판으로 빠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양돈업자에 대한 수출의무량 부과는 모순점이 있다고 하



겠다. 종돈업의 경우도 종돈 20두 이상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한선의 규제가 없어 현재 종돈업체에서는 몇백두씩의 종돈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돈 1두에서 생산되는 자돈중 실제로 종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돈은 2~3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7~8두 정도는 사육후에 육돈으로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편 여기에서 시판되는 양은 과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양돈업 등록·허가제는 다분히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전국 각지에서 뜻있는 양돈업자들은 등록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허가의 상한선은 모든 1,000두(전체 사육 규모 10,000두)로 규제 조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수출,계열화, 종돈업 및 시험사육 등의 예외 조치도 폐지하고 허가 상한선인 모든 1,000두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시책중의 하나인 국민소득 6천불 달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증산층이 확대되어야 하고 농민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농가소득원이 보장되어 증산층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 양돈장에서 그 규모를 조금씩이라도 줄여주고 허가 상한선을 모든 1,000두선으로 줄이고 여기에서 감축되는 숫자로 양돈농가들이 돼지를 사육한다면 돼지를 길러 생활수단을 영위할 수 있는 전업양돈농가들이 늘어나고 소득원이 분배되어 증산층의 확대보급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5만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대기업 양돈장이 1만두 이하로 사육규모를 줄인다면 줄어든 4만두로 사육규모 500두 정도의 전업양돈농가

80호 정도가 양돈업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양돈 농가의 소득원이 생겨나고 소득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는 자제되어져야겠으며, 전업규모의 양돈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겠고, 현행 양돈업 등록제는 폐지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육성법을 만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하는 업종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들 중소기업들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돈업에도 양돈업만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전업규모 양돈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양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업규모 양돈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우리나라 양돈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겠으며, 이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원이 증대되고 증산층이 확대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기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업규모의 양돈업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돈장의 시설 개선이나 종돈개량 및 원가절감에 부단히 노력하여 건전하게 양돈업이 발전되어져 나갈때 우리나라의 양돈업도 선진 국가와 나란히 어깨를 같이하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져 수출경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 믿는다. 이와같이 전업규모의 양돈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현행 양돈업 등록제도는 폐지되어져야 하고 허가제 상한선은 모든 1,000두 정도로 규제되어져 전업양돈업자가 늘어나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갈때 우리나라의 양돈업도 건전하게 발전될 것이다.*